

---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 사례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방송통신통상센터 연구원 윤지원  
(T. 570-4311, jwiyune@kisdi.re.kr)

### 1. 개 요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스크린쿼터를 수호하고자 하는 영화계의 논리로 비춰져 왔으며 그 배경에는 세계 문화다양성 운동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국회 비준 촉구에 있어 국내 영화계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집단 및 국가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상실과 문화확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 문화다양성은 문화분야에만 통용되는 제한적 논리를 넘어 바람직한 정보화사회 건설과 방송분야 육성에 있어 적용할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문화다양성협약과 캐나다와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수호 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화다양성 개념과 문화다양성협약

#### 가. 문화다양성 개념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보존될 때만이 인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발전하였으며 유네스코가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2001년 11월에 열린 제 3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 제1조에 제시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특이성과 복수성 안에 구현되어 있다. 생명의 다양성이 자연에게 필수적이듯 문화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한편, 1998년 프랑스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어 '세계 문화정책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이하 INCP)'의 창설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1998년부터 현재 세계 69개국 문화부 장관이 참여하는 연례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회원국 중 하나이다. INCP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란 지구상에 공존하는 문화들의 상호작용과 다중성을 반영하며, 그 문화는 인류 공통 유산의 한 부분이 된다. 문화다양성은 한 편으로는 현존하는 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과 연관되어 있다.

#### 나.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은 2005년 제 33차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기본적인 특성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고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협약에는 책, CD, 카세트, 라이브공연,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DVD, 또는 인터넷 등의 문화 상품(goods)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협약의 기본 목적은 '문화간 대화 장려와 문화상호성 강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제적 인식증진 및 활동', '정체성과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활동과 상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강화'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sup>1)</sup>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국의 권리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제, 재정지원, 공공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6조)
-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험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함(제8조)
- 당사국은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함(제9조)
-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함.

1) 정갑영 외(2007), p.23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제11조)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을 해석·적용시 또는 이후 다른 조약 체결시 문화다양성 협약의 관련 규정을 고려함(제20조)
-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 주선, 중재 또는 부속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단 당사국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음(제25조)

### 3. 문화다양성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의 노력

#### 가. 캐나다<sup>2)</sup>

1998년 제 1회 INCP 세계문화부 장관회의를 개최한 캐나다는 문화다양성협약 체결과 관련 활동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캐나다는 다민족국가로서 타 문화간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며 일찍이 캐나다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정책(Policy of Multiculturalism)'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 모자이크식 문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민족성 자체를 캐나다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법은 1988년 통과되었다.

##### ○ 방송분야 지원 제도

연방정부의 북부 원주민을 위한 방송정책(Northern Native Broadcasting Policy)의 일환으로 '북부 원주민 방송 접근 프로그램(Northern Native Broadcast Acc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역 원주민의 프로그램 선택권과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언어로 제작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 최신 이슈를 전달한다. 제작과 유통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일년 예산이 지원되며 400개 가량의 원주민 공동체에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 나.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

2) 황동미 외(2003) 참조

으로 인식하고, 문화와 경제적 측면 모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문화기업의 침투로부터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 방송분야 지원제도<sup>3)</sup>

프랑스는 특히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1986년에는 국립영상센터(Centre nationale des Cinematographie, CNC)에서 프랑스 제작사와 배급업자를 대상으로 픽션,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터리, 공연물의 텔레비전 방영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방송 프로그램 산업지원제도(Compte de soutien l'industrie de programmes, 이하 COSIP)'가 생겨났다. 그 목적은 국가적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시청각 작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 결손을 보상하여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COSIP은 1995년 2월 2일자 시행령 95-110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방송사의 '의무할당금'을 세금으로 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금에는 민영 채널의 광고료와 가입료 중 일부, 공영방송의 광고료와 수신료 중 일부, 그리고 부차적으로 비디오 제작사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포함되며, 방송 제작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방송사들의 재원의 일부분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다.

#### 4. 결 어

국내의 경우, 현재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 인식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한 앞으로 전개될 방송콘텐츠 등 시청각서비스 관련 협상에서 문화정체성 수호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방송분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

#### 참고자료:

- [1] UNESCO(2007), "Ten Key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2] 정갑영 외(2007. 12),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하윤금(2003) 참조

- [3] 하윤금(2003. 9. 30), “프랑스 방송영상산업 지원기구와 지원제도”, 방송동향과 분석 통권 183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4] 황동미 외(2003. 12), “국제 문화다양성 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5] <http://www.canadianheritage.gc.ca>
- [6] <http://www.incp-ripc.org>
- [7] <http://portal.unesco.org/culture/en>